

---

[ 토 론 회 ]

# 해양보호구역 효과적 관리방안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14시-16시
- **장소** 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 8BC 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유정주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환경운동연합



# 토론회 순서 및 시간 안내

**접수** (13:50~14:00)

**인사말 및 내빈소개** (14:00~14:10)

**발제** (14:10~14:55)

- 해양수산부 관할 해양보호구역 효과적 관리방안
  -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장
- 환경부 관할 보호구역(해상·해안국립공원) 효과적 관리방안
  - 정승준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 실장
- 문화재청 관할 보호구역(천연기념물 등) 효과적 관리방안
  -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과장

**토론** (14:55~15:30)

- 좌장 :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장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종합토론** (15:30~16:00)



## 인사말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지난 5월 해양보호구역 토론회 개최에 이어 오늘 <해양보호구역 효과적 관리방안을 위한 토론회>에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최근 해양 지역에 쓰레기, 어류 잔재물 등 해양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여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48%는 어업 쓰레기이며, 이 중 80%는 플라스틱이 주성분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게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의 해양면적 대비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7정상회담, Global Ocean Alliance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보호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국가 중심의 해역관리로 지자체·시민 등이 참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관할 수역과 공해에 30%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님, 유정주의의원님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가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모여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의당과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해양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1]**  
**해양수산부 관할 해양보호구역 효과적 관리방안**  
-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장

##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효과적 관리방안 관련 검토 및 논의 사항

### □ 현황

- 현재 해양보호구역 총 31개소\*(1798.4km<sup>2</sup>)로, 12월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0.25km<sup>2</sup>) 추가 지정 추진

\* 습지보호지역 14개소(1437.8km<sup>2</sup>),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14개소(261.272km<sup>2</sup>),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94.14km<sup>2</sup>), 해양경관 보호구역(5.23km<sup>2</sup>)

### □ 검토 및 논의사항

#### ① 면적 확대

- `30by30\* 관련, G20 환경장관선언문('21.7) 및 P4G 정상회의('21.5)계기 생물다양성보호지역확대연합(HAC) 및 세계해양연합(GOA) 동참('21.8)

\* 2030년까지 세계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 관리 목표 및 수단(모니터링, 지정·관리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무인도서(절대보전 무인도서) 활용 가능성(소유권·어업권 등 검토 필요)

#### ② No-take Zone 도입

- (보호구역 지정 → 개발억제) 순기능 및 한계
- No-take Zone 도입 vs 이해관계자(수산업계, 낚시인 등)
- (갯벌법)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 도입·시행 추진

\* 갯벌보전구역, 갯벌안전관리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③ 관리 주체·방안

- (現) 지자체(의지·역량) → 국가 주도 또는 민간 참여 확대
- 해양보호구역별 관리목표·전략 수립·시행(관련 부처·기관 참여)







**[주제발표2]**  
**환경부 관할 보호구역(해상·해안국립공원)**  
**효과적 관리방안**  
- 정승준 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보전실 실장



# 해상·해안국립공원 현황 및 효과적 관리방안

2021. 12.



## 목차

- 01 자연공원 개요
- 02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현황
- 03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방안



## 01 자연공원 개요

### 01 자연공원 개요

### 지정 목적

#### ☞ 자연공원 지정 목적 (자연공원법 제1조)

#### 목적

- ◆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 관리대상



- ◆ 자연생태계
- ◆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 보전



-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보호·복원하는 것

#### 지속 가능한 이용

- ◆ 현재상태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

#### 중심요소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자원의 현명한 이용

# 01 자연공원 개요

## 기본원칙



☞ 자연공원법 기본원칙 (2020.6.9.신설)



✓ 제2조의2 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Understanding the National parks Act

- 0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 0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 0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0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0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 01 자연공원 개요

## 지정 유형



☞ 자연공원 유형

- 국립공원** ◆ 국가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
- 도립공원** ◆ 시도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
- 군립공원** ◆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

### ☐ 자연공원의 지정 절차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지정 기준

◆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함

기준 (시행령 발표 1)

|           |  |
|-----------|--|
| 자연 생태계    | ◆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
| 자연경관      | ◆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 ◆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 ◆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 | ◆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



자연공원 기본계획 / 공원계획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 공원용도지구계획

|  |   |  |  |
|--|---|--|--|
| <p><b>공원자연보존지구</b></p> <p>국립공원 필수시설 및 행위</p> <p>• 최소한의 공원시설/사업</p> | <p><b>공원자연환경지구</b></p> <p>공원시설 / 1차산업행위</p> <p>• 공원시설/사업 능축산업</p> | <p><b>공원마을지구</b></p> <p>주민 일상생활 유지 필요시설 설치</p> <p>• 단독주택, 근린생활 등</p> | <p><b>공원문화유산지구</b></p> <p>사찰/문화재 시설</p> <p>• 불사에 필요한 시설 설치</p> |
|--|---|--|--|



02 해상·해안국립공원 일반현황

국립공원 지정 현황

총 22개 국립공원

1 산악형 17, 사적형 1, 해상·해안형 4

- 1967. 12. 지리산국립공원 최초 지정
- 1968. 12.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 2016. 08. 태백산국립공원(22호) 지정

2 전체 국립공원 면적 6,726km<sup>2</sup>

· 육상 3,972km<sup>2</sup>(59%), 해상 2,754km<sup>2</sup>(41%)

- 해상·해안국립공원 면적 3,333km<sup>2</sup>(50%)

<참고사항> 자연공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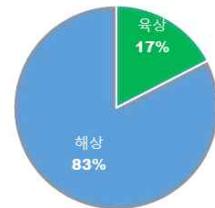
- » 도립공원: 30개소 / 시도지사 지정 / 1,147km<sup>2</sup>
- » 군립공원: 27개소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 238km<sup>2</sup>
- » 지질공원: 13개소 / 환경부장관 인증 / 명소 218개소(471.6km<sup>2</sup>)



해상·해안국립공원 면적

기본현황

| 지정순위 | 공원명   | 지정년월일      | 위치     | 공원면적(km <sup>2</sup> ) | 비고                           |
|------|-------|------------|--------|------------------------|------------------------------|
| 1    | 한려해상  | 1968.12.31 | 경남, 전남 | 535.676                | 육상: 127.188<br>해상: 408.488   |
| 2    | 태안해안  | 1978.10.20 | 충남     | 377.019                | 육상: 24.223<br>해상: 352.796    |
| 3    | 다도해해상 | 1981.12.23 | 전남     | 2,266.221              | 육상: 291.023<br>해상: 1,975.198 |
| 4    | 변산반도  | 1988.06.11 | 전북     | 153.934                | 육상: 136.707<br>해상: 17.227    |



<육상/해상 면적 비율>

공원별 육상 / 해상 면적(km<sup>2</sup>)



### ☞ 해상·해안국립공원 용도지구현황

공원자연환경지구가 95.7%로 구성

| 구분       | 계                     | 한려해상                | 태안해안                | 다도해해상                 | 변산반도                |
|----------|-----------------------|---------------------|---------------------|-----------------------|---------------------|
| 총 면적     | 3,332.85<br>(100%)    | 535.676<br>(100%)   | 377.019<br>(100%)   | 2,266.221<br>(100%)   | 153.934<br>(100%)   |
| 공원자연보존지구 | 138.647<br>(4.16%)    | 11.239<br>(2.10%)   | 0.01<br>(0%)        | 105.254<br>(4.64%)    | 22.144<br>(14.39%)  |
| 공원자연환경지구 | 3,189.636<br>(95.70%) | 523.627<br>(97.75%) | 376.664<br>(99.91%) | 2,159.062<br>(95.27%) | 130.283<br>(84.64%) |
| 공원문화유산지구 | 1.524<br>(0.05%)      | 0.027<br>(0.01%)    | 0<br>(0%)           | 0.171<br>(0.01%)      | 1.326<br>(0.86%)    |
| 공원마을지구   | 3.043<br>(0.09%)      | 0.783<br>(0.15%)    | 0.345<br>(0.09%)    | 1.734<br>(0.08%)      | 0.181<br>(0.12%)    |

### ☞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자연공원법 제28조)

- ✓ 국가보호종의 서식하거나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인위적 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
- ✓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 생태계의 자연적인 회복 유도

####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2020년 기준)

| 구분    | 개수 | 지정면적<br>(㎡) | 지정유형  |       |    |    |    |
|-------|----|-------------|-------|-------|----|----|----|
|       |    |             | 식물군락지 | 동물서식지 | 습지 | 사구 | 도서 |
| 계     | 70 | 19,000,665  | 21    | 37    | 4  | 1  | 7  |
| 한려해상  | 20 | 682,882     | 9     | 9     | -  | -  | 2  |
| 태안해안  | 8  | 1,738,613   | -     | 5     | -  | 1  | 2  |
| 다도해해상 | 35 | 14,233,863  | 8     | 20    | 4  | -  | 3  |
| 변산반도  | 7  | 2,345,307   | 4     | 3     | -  | -  | -  |

※ 해역이 포함된 특별보호구역은 14개소, 11,290,559㎡(해역면적: 6,875,627㎡)

###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역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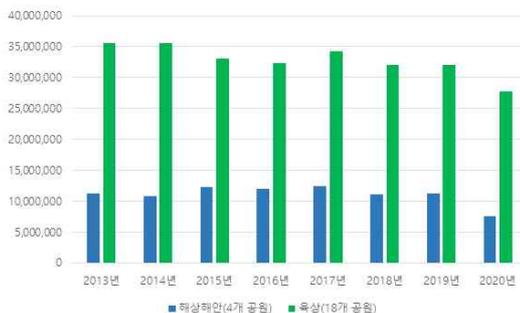
전체 73개 마을, 1,037명 거주

| 구분    | 마을 | 인구수   | 마을명  | 명품마을            |
|-------|----|-------|--|-----------------|
| 계     | 73 | 1,037 |  | 9               |
| 한려해상  | 1  | 0     | 오동도  |                 |
| 한려동부  | 23 | 345   | 소양화, 안섬, 한목, 한개, 송절포, 연막, 가왕, 따신물, 경포, 향포, 애박골, 사당개, 작은옹포, 큰옹포, 작은양화, 다랑골, 답하, 만지, 송도, 오곡, 갈마, 비산, 역줄          | 내도, 함목, 만지도     |
| 태안해안  | 6  | 26    | 마외, 방죽골, 만리포, 외도, 장고도, 학암포   | -               |
| 다도해해상 | 14 | 163   | 소두, 소횡간, 중터, 가는고지, 조피동, 소우실, 동고지, 상신, 덕포, 냉수동, 수락, 팔영산, 안백도, 상서  | 상서, 평촌, 동고지, 덕포 |
| 다도해서부 | 25 | 439   | 관호, 관매, 장산편, 장산너머, 소성남, 외병, 눌옥, 각진바위, 진목, 세목, 녀구, 나리, 모래, 죽도(맹골죽도), 혈도, 광도, 대마, 도리, 안태, 동리, 죽도, 천촌, 암동, 영산, 등대 | 관매도, 영산도        |
| 변산반도  | 4  | 64    | 군막, 개암, 사자1, 사자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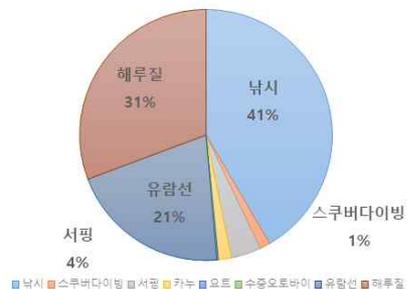
### 해상·해안국립공원 탐방객 현황

연 평균 약 1천 만명으로 전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 대비 약 25% 차지, 해양레저 이용객은 연간 67만명으로 추정

- 탐방객수 증가율은 24.2%이며, 육상공원(6.7%)의 약 3.6배('10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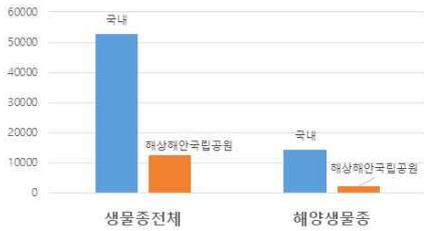
(육상/해상·해안 탐방객수 추이)



(해양레저 이용 비율)

해양·해안국립공원 생물자원 현황

한국생물종의 약 23%(12,377종, '19년), 해양생물종의 약 22% (3,076종, '19년)가 서식·분포



- 국내 멸종위기야생생물 267종 중 해양·해안국립공원 109종(62.2%) 서식



03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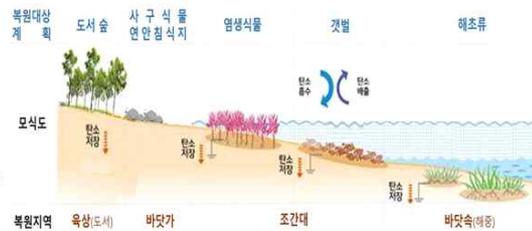
관리전략

해양·해안국립공원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                           |                       |   |
|---------------------------|-----------------------|---|
| 3대<br>부문<br>/<br>6개<br>과제 | 1. 탄소흡수원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 (1)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복원<br>(2) 기후변화 대응 조사·모니터링 강화 |
|                           | 2. 해양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 (1)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br>(2)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협력 관리    |
|                           | 3.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 체계 개선  | (1) 법제도 개선 및 관리 인프라 확대<br>(2) 해양생태계 보전인식 증진 |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복원

- 육상도서-바닷가-갯벌-해중을 아우르는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 염생식물, 해조류 등 복원을 통한  
해상해안국립공원 해양 탄소흡수원 확대('25년까지 97ha)
- 복원대상 생태적 특징 고려, 지역사회 참여확대 등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복원방법 개선, 신규 분야 발굴(해조류 등)



염생식물 복원



거머리말 복원



사구식물 복원



해안침식지 복원

03

해양·해안국립공원 관리방안

1. 탄소흡수원 등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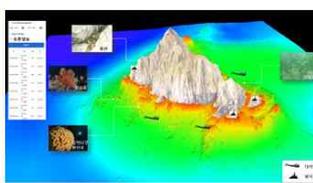
- 아열대 해양생물종 유입 확대에 따른 기후변화 모니터링 확대
- 국민 참여형 해양생태계 시민과학 모니터링 활성화
- 기후변화모니터링을 통한 해양생태지도 제작 및 활용성 증대
- 해양 기후변화 공존스테이션 구축(4-5개소)



시민과학자 수중생태계 모니터링



네이처링 앱 모니터링



3차원 해양 생태지도



일본 북해도 아케시 해양스테이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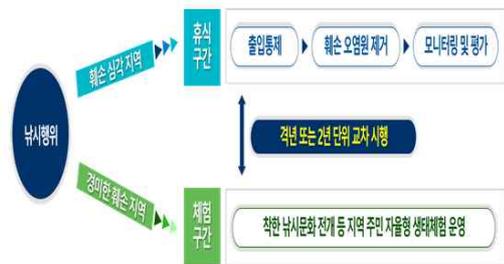
해양·해안국립공원 관리방안

2. 해양생태계 위협요인 관리



갯바위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 평가 확대

- 갯바위의 훼손·오염 심각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 시범추진을 통해 자연회복 유도
- 갯바위 훼손·오염 실태파악 및 제거(~8월)
-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 분석·평가 및 확대(9월~)



폐남 제거



제거된 폐남



천공된 갯바위 복원

### III 해양쓰레기 자체 수거 확대 및 협력 관리 강화

- **해양쓰레기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공단 자체 수거 기반 및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
  - 자체 수거·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처리 예산 확대**
-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해양쓰레기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수거지역 역할분담, 장기 적치 쓰레기 수거, 처리기간 단축 등 협력
  - 해양환경공단과 공원 내 특별보호구역, 항포구 주변 등 **침적쓰레기의 분포 조사와 수거 처리**
- **대국민 참여 확대 및 인식제고**
  - 반려해변제도 해수부와 공동 운영, 해변정화 캠페인 및 새활용 캠페인 활성화



### III 법제도 개선 및 관리 인프라 확대

- **(법제도)** 해양의 특성을 반영, 해양생물채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 주민지원 혜택 강화
  - (해양생물채취) 일정한 지구 내 해양생물 포획·채취 도구 기준 신설 검토
  - (주민혜택) 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에 공원구역 공유수면 내 어업 영위자 포함 검토
- **(인프라)** 해상공원의 불법행위 신속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선박 확충
  - '21년 7척 ⇒ '22년 9척 ⇒ '23년 15척
  - \* 해상해안국립공원 공원관리선 활용 1시간대 순찰 단속 가능
- **(인력)**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 원거리 도서지역 분소 중심 인력 확대
  - \* 원거리 도서 분소별로 공원관리선을 활용한 해상 순찰체계 추가 인력 확보 추진 (현재 21개 분소)



### 해양생태계 인식증진

####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착한 낚시, 보전 다이빙 등) 확산

- (심포지엄) 국립공원 해양레저 실태와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 심포지엄(7월)
- (다이빙) 시민단체, 민간(협회, 동호회 등)과 함께하는 보전 다이빙 문화 정착
- (해루질·낚시) 생태휴식제와 연계한 '착한 낚시·해루질 캠페인' 추진

#### 지역주민 대상 해양 국가보호종 홍보를 통한 보호 인식 증진

- (교육)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대면교육(시청각 교육 등)
- (홍보) 국가보호종에 대한 설명(지정 및 보호근거 등)이 담긴 리플릿, 포스터 배부



#### 낚시

- ✓ 낚사용안하기
- ✓ 과도한 밑밥쓰지 않기
- ✓ 쓰레기 되가져가기
- ✓ 출입금지 도서·해안출입금지

#### 해루질

- ✓ 어린개체 놓아주기
- ✓ 정해진 도구(호미, 손등만)이용하기
- ✓ 임시출입통제구역 확인하기









**[주제발표3]**  
**문화재청 관할 보호구역(천연기념물 등)**  
**효과적 관리방안**  
-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과장



# 해양자연유산의 효과적 관리방안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황 권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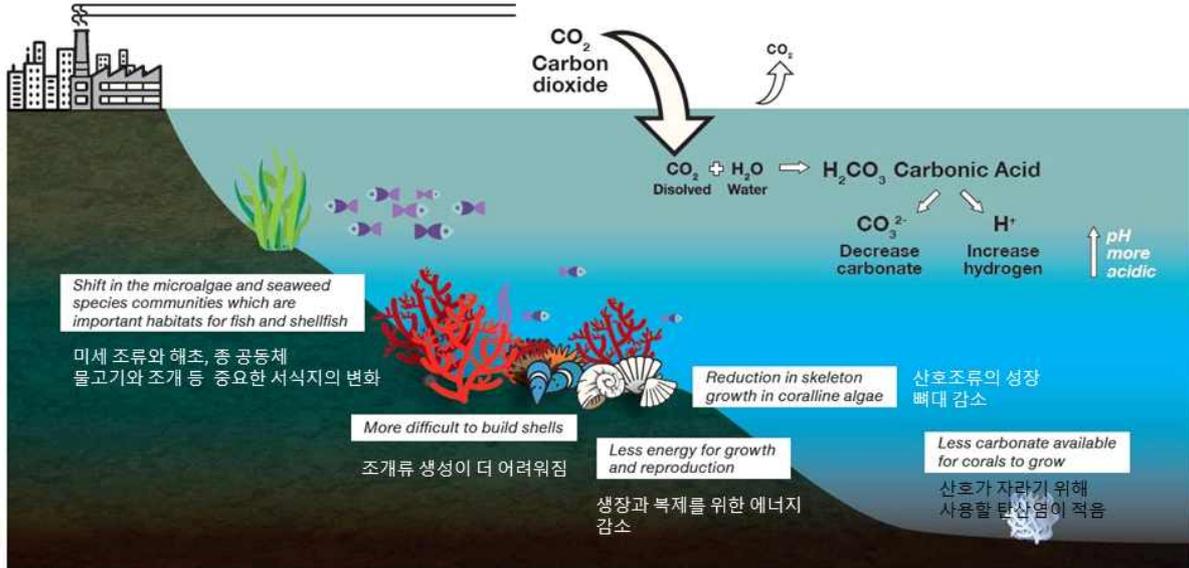
목 차



|  |  |
|--|--|
|  | <b>서론</b>  |
|  | <b>본론</b><br>보호구역관리의 국내외 동향<br>지금 세계는 자연유산시대 NbS<br>해양자연유산의 국제적 보존관리 체계<br>국내 부처별 보호지역의 보존관리<br>문화재청 해양자연유산의 지정과 보존관리<br>해양분야 전통지식의 중요성<br>한국형 해양보호구역 : 자연성지<br>보호구역으로서 해양자연유산의 전망<br>해양자연유산의 주민공동체 역할 |
|  | <b>결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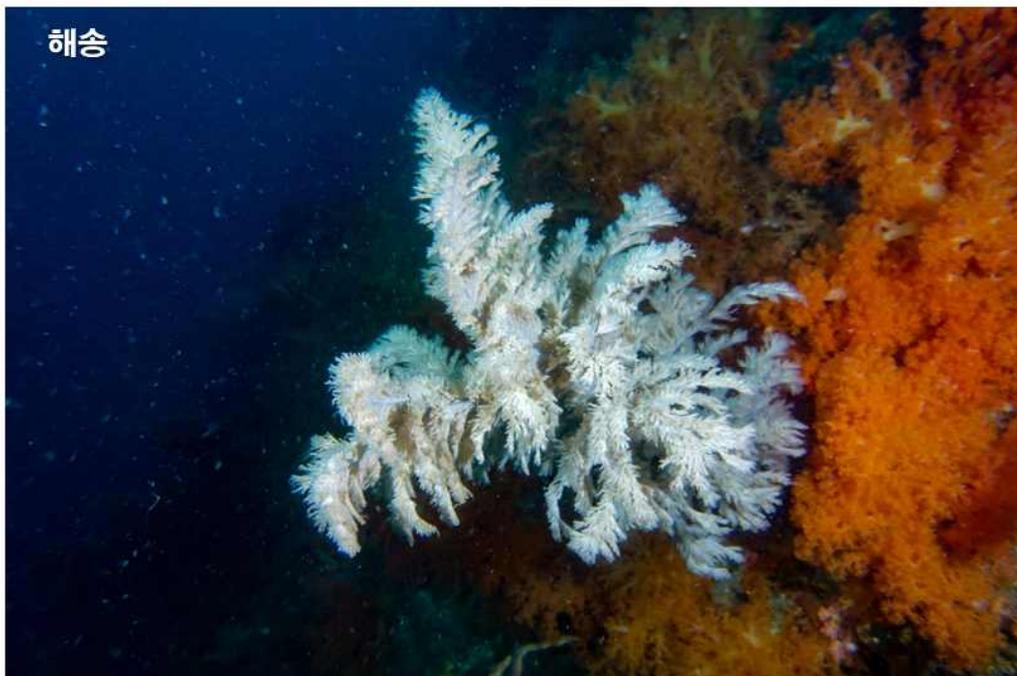


## 이산화탄소 배출과 해양의 위기



## 해양자연유산에 닥친 기후변화 피해

수온 상승



해양자연유산에 닥친 기후변화 피해

수은 상승



해양 자연유산에 닥친 기후변화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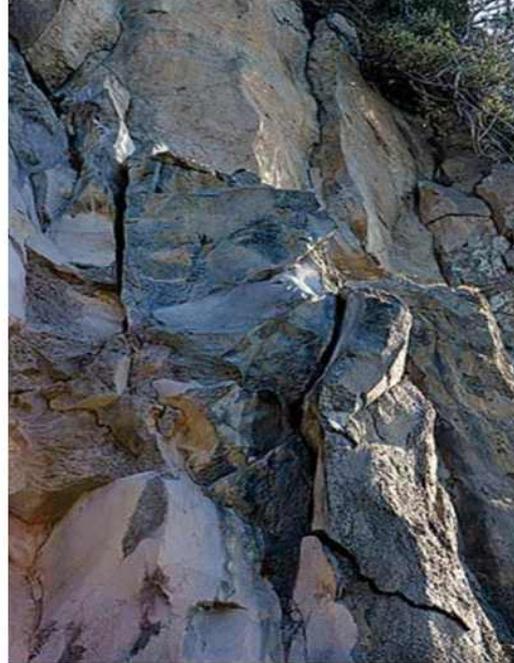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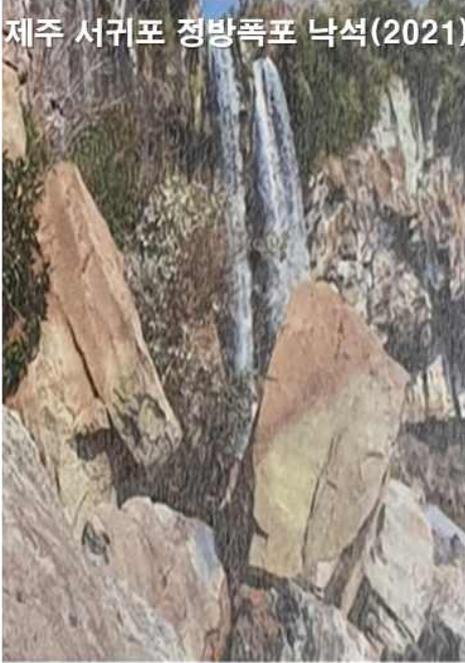
해수면 상승



해양 자연유산에 닥친 기후변화 피해

해수면 상승, 태풍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낙석(2021)



해양 자연유산에 닥친 기후변화 피해

해수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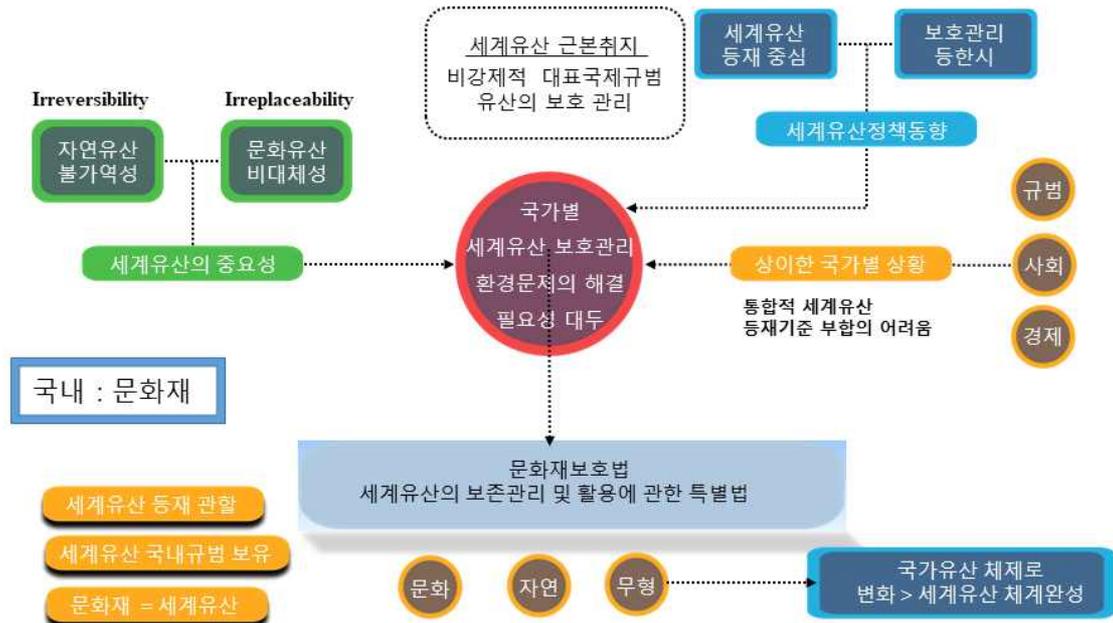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국제사회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의 주요 이슈 : 문화 자연유산의 등재구분 모호, 등재 여건 악화



국내 : 문화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과 해양보호구역(MPA)

보호지역(Protected Area)

- ① 생물다양성, 자연과 관련된 문화적 자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되고, 법적 또는 기타 효과적 수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육지 또는 해양지역(IUCN, 1994)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 ① 해수 및 이와 관련된 식물상, 동물상, 역사,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조간대 혹은 조하대 영역으로서, 관련된 환경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혹은 그 외 효과적인 수단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구역(Kelleh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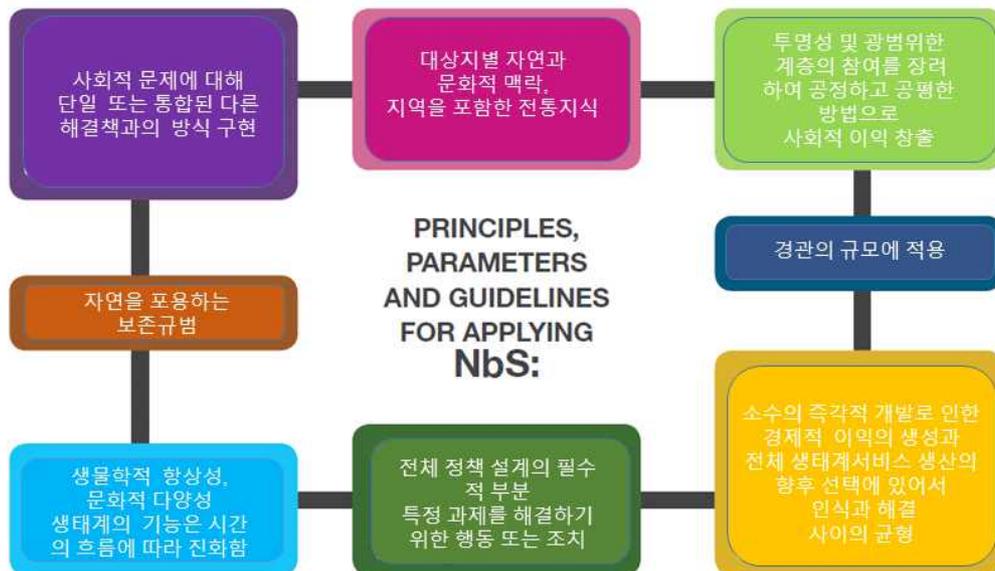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와 해양보호구역(MPA)

### IUCN 카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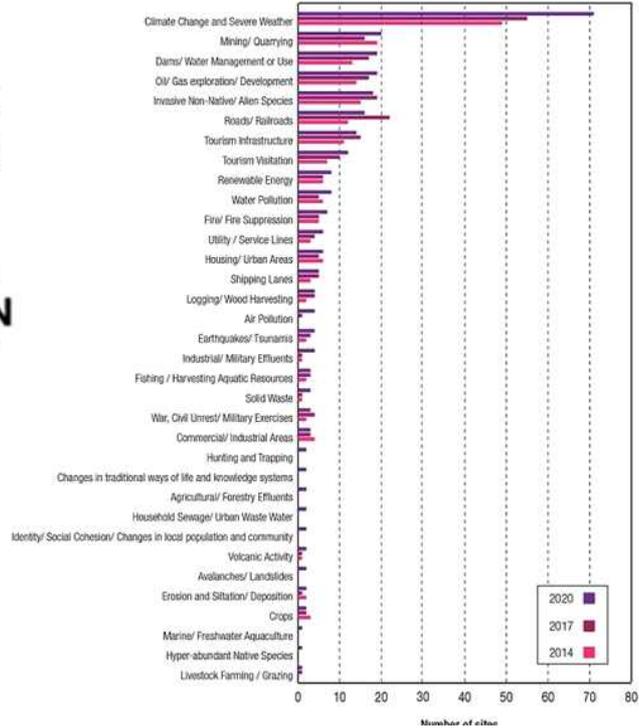
| 카테고리         | 해당지역  | 비고                |
|--------------|---|-------------------|
| Category I   | 과학목적 또는 야생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I (a) 엄정한 자연보호구(Strict Nature Reserves)</li> <li>❶ I (b) 야생지역(Wilderness areas)</li> </ul> |                   |
| Category II  | 생태계 보호와 위락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❷ 국립공원(National Park)</li> </ul>   |                   |
| Category III | 특정한 자연특성의 보존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❸ 자연유산, 천연기념물(Natural Monument)</li> </ul>   | 천연기념물<br>(천연보호구역) |
| Category IV  | 관리조치를 통한 보존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                   |
| Category V   | 경관/해양경관 보존과 위락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 도서해안형<br>자연명승     |
| Category VI  |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되는 보호지역  |                   |

## 지금 세계는? 자연유산시대 NbS

### Nature-based Solutions (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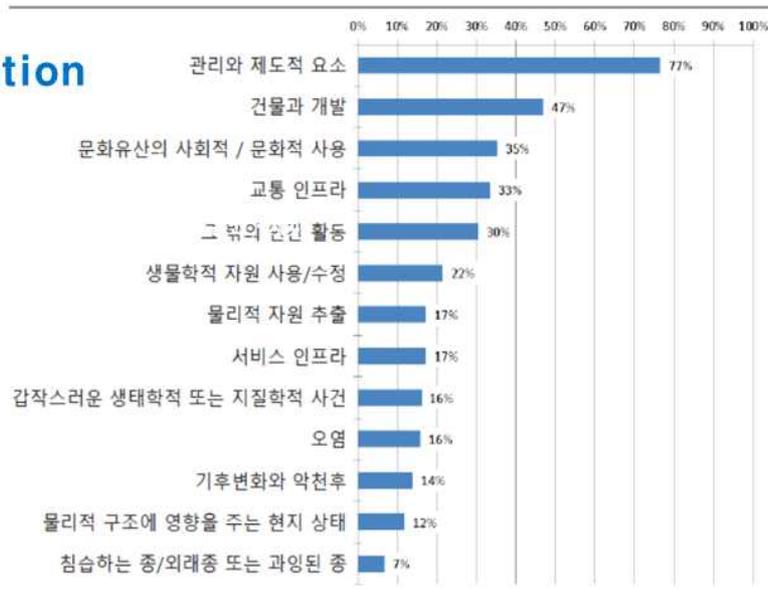


## 해양자연유산의 국제적 보존 관리체계 적용 (IUCN)



## Outlook Conservation

### 보존 관리 항목 예시



## 국내 부처별 보호지역의 보존관리 (5개 부처 17개 법률)

### 국가보호지역 (KDPA)

#### ■ 국가보호지역 등재현황('21.9월 기준)

○ 육상(내륙) : **16.86%** ('21.5월 WDPa 공식통계 : **16.97%**)

- (27,457.35km<sup>2</sup> - GIS상 중복면적 : 10,552.45km<sup>2</sup>)/100,284km<sup>2</sup>(육상 국토면적)

○ 해양(연안 포함) : **2.12%** ('21.5월 WDPa 공식통계 : **2.46%**)

- (12,427.44km<sup>2</sup> - GIS상 중복면적 : 4,479.44km<sup>2</sup>)/374,936km<sup>2</sup>(EEZ 포함 면적)

### 국가 보호지역 관계기관 협의체 정책 현안

- 국내 OECMs 관련 신규 유형 발굴 및 등재
- 부처별 신규 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미등재 보호지역 WDPa 등재
- 국제기구 지정 보호지역(WDPa 등재)의 KDPA 포함 추진

## 해양분야의 부처협력과 관련 보호구역, 해당 법률

| 구분               | 해양수산부                 | 환경부                                   | 국토부                               | 문화재청                                       | 비고 |
|------------------|-----------------------|---------------------------------------|-----------------------------------|--|----|
| 보호<br>구역<br>(법률) | 습지보호구역<br>(습지보전법)     | 자연공원<br>(자연공원법)                       | 자연환경보전지역<br>(국토계획 및 이용에<br>관한 법률) | 세계자연유산<br>(세계유산의 보존관<br>리 및 활용에 관한<br>특별법) |    |
|                  | 해양보호구역<br>(해양생태계법)    | 야생생물보호구역<br>(야생생물 보호 및 관<br>리에 관한 법률) |                                   | 천연기념물<br>(문화재보호법)                          |    |
|                  | 환경보전해역<br>(해양환경관리법)   | 특정도서<br>(도서생태계법)                      |                                   | 천연보호구역<br>(문화재보호법)                         |    |
|                  | 수산자원보호구역<br>(수산자원관리법) | 생태 경관보존지역<br>(자연환경보전법)                |                                   | 명 승<br>(문화재보호법)                            |    |
|                  |                       | 습지보호구역<br>(습지보전법)                     |                                   |  |    |
|                  |                       |                                       |                                   |  |    |

## 부처별 보호지역의 보존관리 (5개 부처 17개 법률)



| 부처         | 보호지역 유형       |            | 소관법률               | 현재 개소수 및 면적(㎡) |           |           |           |
|------------|---------------|------------|--------------------|----------------|-----------|-----------|-----------|
|            |               |            |                    | 개소             | 합계        | 육상        | 해양        |
| 총 계        |               |            |                    | 3,439          | 39,884.79 | 27,457.35 | 12,427.44 |
| 환경부        | 자연공원          | 국립공원       | 자연공원법              | 22             | 6,796.26  | 4,028.62  | 2,767.64  |
|            |               | 도립공원       |                    | 29             | 1,038.29  | 733.56    | 304.73    |
|            |               | 군립공원       |                    | 27             | 238.31    | 235.42    | 2.89      |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 법률) | 1              | 26.57     | 26.57     | -         |
|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자체) |            |                    | 394            | 996.93    | 996.93    | -         |
|            | 특정도서          |            | 도서생태계법             | 257            | 13.81     | 13.81     | -         |
|            | 생태·경관 보전지역    |            | 자연환경보전법            | 9              | 237.87    | 237.87    | -         |
|            | 생태·경관보전지역(시도) |            |                    | 24             | 37.55     | 37.55     | -         |
|            | 습지보호지역        |            | 습지보전법              | 27             | 130.30    | 130.30    | -         |
|            | 습지보호지역(시도)    |            |                    | 6              | 2.14      | 2.14      | -         |
|            | 수변구역(4대강)     |            | 4대강 수계법            | 4              | 1,189.23  | 1,189.23  | -         |
|            | 상수원보호구역       |            | 수도법                | 294            | 1,151.78  | 1,151.78  | -         |
|            | 특별대책지역        |            | 환경정책기본법            | 2              | 1,972.03  | 1,972.03  | -         |
|            | 해양수산부         | 습지보호지역(갯벌) |                    | 습지보전법          | 12        | 1,492.82  | -         |
| 습지보호지역(시도) |               | 1          | 6.15               |                | -         | 6.15      |           |
| 해양보호구역     |               | 생태계        | 해양생태계법             | 14             | 263.55    | -         | 263.55    |
|            |               | 생물         |                    | 1              | 91.57     | -         | 91.57     |
|            |               | 경관         |                    | 1              | 5.23      | -         | 5.23      |
| 환경보전해역     |               | 해양환경관리법    | 4                  | 1,882.05       | 982.58    | 899.47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수산자원관리법    | 30                 | 3,210.57       | 712.99    | 2,497.58  |           |

## 부처별 보호지역의 보존관리 (5개 부처 17개 법률)



| 부처   | 보호지역 유형  |        | 소관법률             | 현재 개소수 및 면적(㎡) |          |          |          |
|------|----------|--------|------------------|----------------|----------|----------|----------|
|      |          |        |                  | 개소             | 합계       | 육상       | 해양       |
| 국토부  | 도시자연공원구역 |        | 공원녹지법            | 13             | 280.54   | 280.54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 9,794.39 | 6,700.77 | 3,093.62 |
|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        | 문화재보호법           | 373            | 1,189.61 | 229.17   | 960.44   |
|      | 천연보호구역   |        |                  | 11             | 456.32   | 431.68   | 24.64    |
|      | 명승       |        |                  | 113            | 218.90   | 201.79   | 17.11    |
|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지역 |        | 백두대간법            | 1              | 2,646.00 | 2,646.00 | -        |
|      | 산림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 | 산림보호법            | 358            | 1,616.78 | 1,616.78 | -        |
|      |          | 생활환경   |                  | 2              | 0.12     | 0.12     | -        |
|      |          | 경관     |                  | 196            | 173.98   | 173.98   | -        |
|      |          | 수원함양   |                  | 1,116          | 2,680.12 | 2,680.12 | -        |
|      |          | 재해방지   |                  | 96             | 45.02    | 45.02    | -        |

### 문화재보호법에서의 해양자연유산



조선보물고적천연기념물보존요목(1934)

: 해방 이전 146건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보호법(1962)

: 현재 자연유산 지정건수 총 590 건 (2021.11)

천연기념물 469건

(동물 101건, 식물 270건, 지질 87건, 천보 11건)

명승 121건 지정

**섬 관련 지정건수 총 125건**

: 천연기념물 103건 (동물19, 식물 51, 지질 26, 천보 7) 명승 2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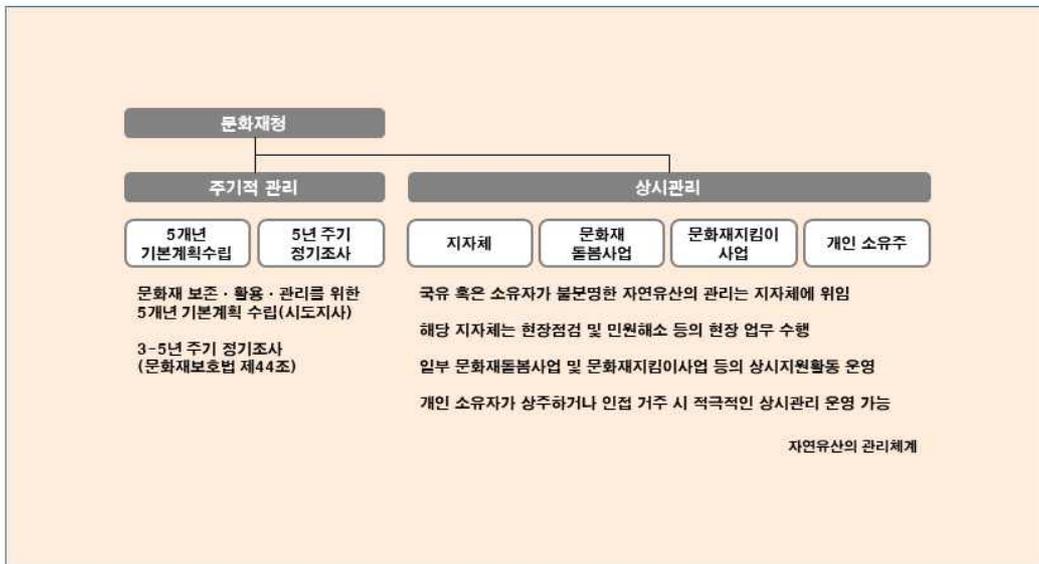


국내 최초 해양보호구역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9호  
(일제강점기 지정)



### 문화재청의 자연유산 보존관리

####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현황



##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 대상

### 천연기념물

(동물)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식물)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 군락 또는 숲  
 문화·민속·관광·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생육지·자생지  
 (지질·지형)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학술적 가치가 큰 지형, 지표·지질 현상  
 (천연보호구역)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 명승 해안형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섬 등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포구 등)

## 문화재청 해양자연유산 지정과 보존관리 현황

### 천연기념물, 명승의 보호관리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행위를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문화재청 자연유산의 해양보호구역(MPA) 지정과 보존관리 현황

### 천연기념물, 명승의 보호관리

####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해양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동물)에 관한 문화재 영향 검토, 규제 행위

- 1) 포획(捕獲)·채취·사육·도살(屠殺)하는 행위
- 2) 인공으로 증식·복제하는 행위
- 3)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치료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 5)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 6) 표본(標本)·박제(剝製)하는 행위
- 7) 매장·소각(燒却)하는 행위

## 문화재청 자연유산의 해양보호구역(MPA) 지정과 보존관리 현황

### 천연기념물, 명승의 보호관리

####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해양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문화재 영향 검토, 규제 행위

- 1)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3) 토지 및 수면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깍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4)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5)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6)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8)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9)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 문화재청 자연유산의 해양보호구역(MPA) 지정과 보존관리 현황

### 천연기념물, 명승의 보호관리

#### 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해양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문화재 영향 검토, 규제 행위

-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5)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입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6)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 7) 천연기념물이 서식, 번식하는 지역에서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해양자연유산 보존관리

### 해양자연유산 종합정비계획의 효율화



자연유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절차

|                  |   |   |                  |   |
|------------------|---|---|------------------|---|
| <b>자연유산 환경조사</b> | 자연유산의 개요, 역사적 배경, 주변 자연환경 지정구역 내 문화재 현황, 현상변경 허가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 <b>자연유산 보존계획</b> | 문화재 구역 정비계획, 문화재 복원/정비계획                            |
| <b>인문환경 조사</b>   | 상위계획·관련 법령, 교통·통신현황, 토지이용현황, 공개구역현황, 건축물·시설물 설치현황, 현안 및 쟁점 이용자현황·수입현황, 관리운영현황, 방재현황, 문화재 주변현황, 관련행사, 문화재 홍보, 지역민 의식조사 | ▶ | <b>인문환경 조성계획</b> | 건축물 및 시설물 정비계획, 통신계획, 관람환경 개선계획, 활용 및 홍보계획 지역민 참여계획 |
| <b>자연환경 조사</b>   | 기상환경, 지형·지세, 토양, 수계 및 수문, 식생, 동물상, 기후변화 요인 및 대상 조사  | ▶ | <b>자연환경 조성계획</b> | 지형정비계획, 수계정비계획, 토양개선계획, 식생정비계획, 동물보존계획 기후변화대응 전략    |
| <b>경관조사</b>      | 경관자원, 경관 저해물, 가시권, 외부조망점  | ▶ | <b>경관계획</b>      | 경관정비계획, 경관탐방계획                                      |

자연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명승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항목

## 해양자연유산분야 보존관리 정책

### 천연기념물 동물

#### 주요 사업

- 기후변화 취약종 서식지 조성 및 개선방안 수립(해송, 붉은 박쥐 등)
- 멸실위험이 높은 천연기념물 대상 유전자원 확보 및 영구 동결 보존
-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범위 증가종 및 감소종 파악 및 보존방안 수립
-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종 국내 정착과 고유종 훼손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 해양자연유산 분야 보존관리 정책

### 천연기념물 식물

#### 주요 사업

- 잠재자원 발굴 다양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식물 유산 확보, 지정확대
-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유산의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및 과학적 조사 첨단화
- 자생지, 분포지(도서)의 변화에 따른 식물유산의 유형 재분류, 모니터링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 기반 확대
- 기후변화 천연기념물 식물 취약종 보전을 위한 적응 조건 확보
- 노거수 병해 저항성 향상 및 상처치료 기법 등 조사 연구



## 해양자연유산 분야 보존관리 정책 천연기념물 지질

### 주요 사업

- 기후변화 노출에 따른 지질유산 현황 DB 구축 및 모니터링
- 지질유산의 모세혈관형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지질유산 안전평가, 구조진단 고도화
- 기후변화 취약 (도서 해안형) 지질유산 보호관리



## 해양자연유산 분야 보존관리 정책 명승

### 주요 사업

- 기후변화에 따른 경관변화 고해상도 모니터링
- 드론 기술 활용 대면적 문화재 상시관리체계 구축
- 기후 및 자연환경 빅데이터 자료 활용 예방 중심형 관리체계 구축
- 지역자원 활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문화재청의 대표적 해양자연유산

### 해양자연유산 / 자연성지



## 문화재청의 대표적 해양자연유산

### 해양자연유산 / 수림지, 동물, 정원유적, 지질



생물자원의 전통지식 (Traditional Biological Knowledge, TBK)

생물자원의 전통지식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생물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소유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

구전, 문자로 남아있던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적재산권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

해양,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유산의 관점

한국의 세계자연유산 1호와 2호 모두 바다와 관련된 자연유산이라는데 주목

해양생물자원의 전통지식

물리적·비물리적 문화에 대한 것으로 민간신앙에서부터 각 자원의 명칭, 제원이나 기능, 생물학적 특성, 보급 조달방법 또는 보존에 대한 관리 등

우리나라의 해양과 관련된 전통지식



관찬 지리지, 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섬의 위치와 현황 소개



개인저작류(지리지, 기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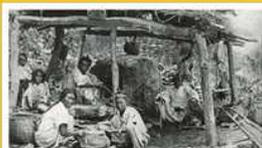
이중환 택리지 중 해산 : 바다 북판에 있는 산으로 한라산, 남해현의 금산동천, 완도, 군산도, 덕적도, 울릉도

최익현의 유한라산기(제주) : 외따로 떨어진 작은 섬이지만 큰 바다의 기둥이요, 한반도 해양의 입구



백과사전류

자산어보 : 정약전의 최초 해양생물백과사전  
오주연문장전산고 : 해양생물에 관한 내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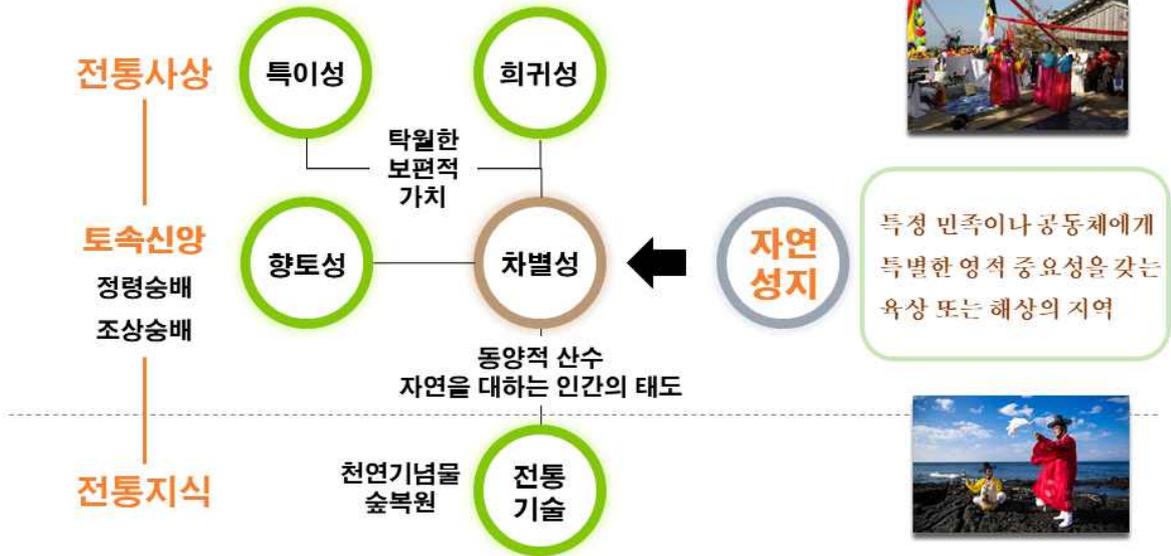


섬에 계승된 관습, 전통기술

풍어제, 당산제 등 제례와 전설, 어업기법, 어구 등

## 인간의 문화와 해양생태가 살아 숨쉬는 한국형 해양보호구역, 자연성지

섬, 해안과 해양에서의 보호구역 설정 · 관리방법



## 문화재청 해양자연유산의 국제홍보 현황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 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문화재청의 해양보호구역 보존정책 소개 문구

“문화재청은 섬과 연안지역의 천연기념물 명승지를 적극 지정하여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2012 제주





새로운 생태자원의 보고  
해양자연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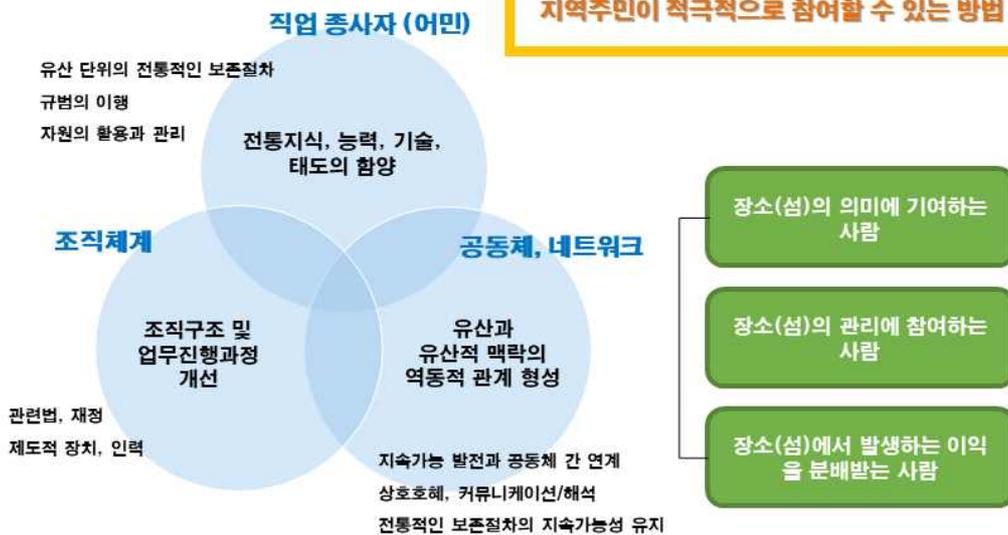




## 해양자연유산의 주민공동체 역할

### 해양자연유산 주민공동체의 구성과 역할

해양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홍도천연보호구역 유람선 자연유산 해설요원 문화재 전문가 교육



자연유산법으로 완성되는 해양자연유산 관리 및 확대방안

자연유산의 체계적 · 선제적 관리



## 해양자연유산 효과적 관리를 위한 대안

### 해양보호구역 보호관리 과제



### 부처간 중복지정의 효과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법)  
 천연기념물(문화재보호법)

**상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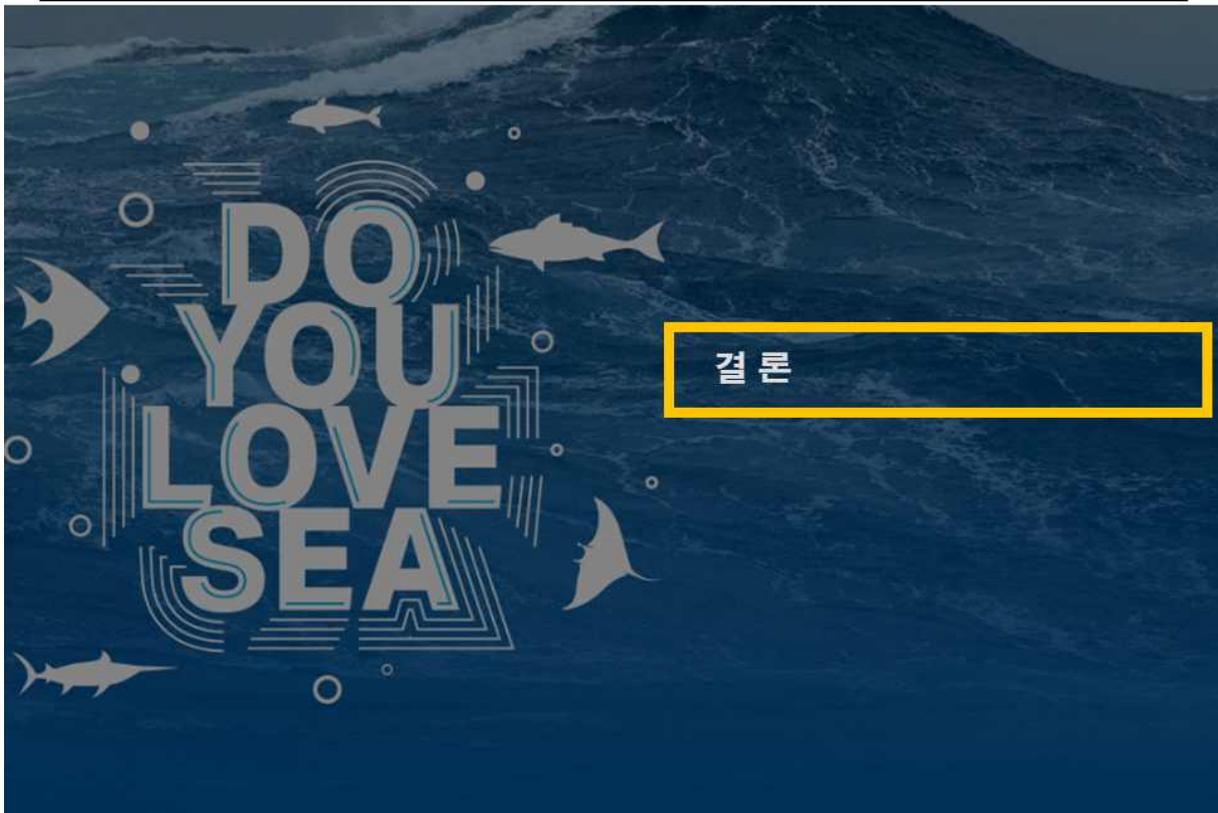


해돋어 (海豚魚)

색깔은 흑색이고 큰 돼지와 비슷하며 장기는 개와 비슷함. 다닐 때 반드시 무리를 지어 다니고 물 위로 나와 뽀뽀거리는 소리를 냄. 흑산도에 많은데 잡는 법을 알지 못함. 몸 안에 기름이 있어서 몸 속에 있는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저포를 비추면 저포놀이를 할만 하지만 책 읽는 곳이나 작업장을 비추면 어두움. 하늘에서 바람이 불려고 하면 솟구쳐 오름. 뱃사람들은 바람과 비를 점치는 데 보부어가 바로 상괭이를 일컬음.

(자산어보)

대한민국 자연유산홍보대사 위촉 국내외 홍보활동



### 해양자연유산의 효과적 관리 방안

해양자연유산의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의 현행화와 피해 사전예방체계 마련

해양생물자원의 전통지식은 자연유산적 접근의 중요 가치

IUCN 카테고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 명승 보존 취지와 부합

해양자연유산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과 지속가능한 해양문화 향유

전통방식(정신문화)과 조화된 해양, 주민공동체 참여 차원 거버넌스 관리

자연유산 보존관리 제도 완성 자연유산법 제정으로 합리적 보존관리, 세계화 기여

기후위기 대응 해양자연유산의 가치 적극 발굴, 국제관련기구 동향 대응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 해양자연유산의 보존관리 계획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이외에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갯벌은 강화 남단갯벌 일부가 포함된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이며, 이외 다수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으로 지정·보호
- 강화 남단갯벌 등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별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제35조(허가사항)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
- 문화재 지정(보호)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아울러, 현 지정된 한국의 갯벌 및 2025년 확대 추진 지역 중 철새의 서식지 등으로 보존 가치가 뛰어난 지역(유부도 갯벌, 화성 제부도 갯벌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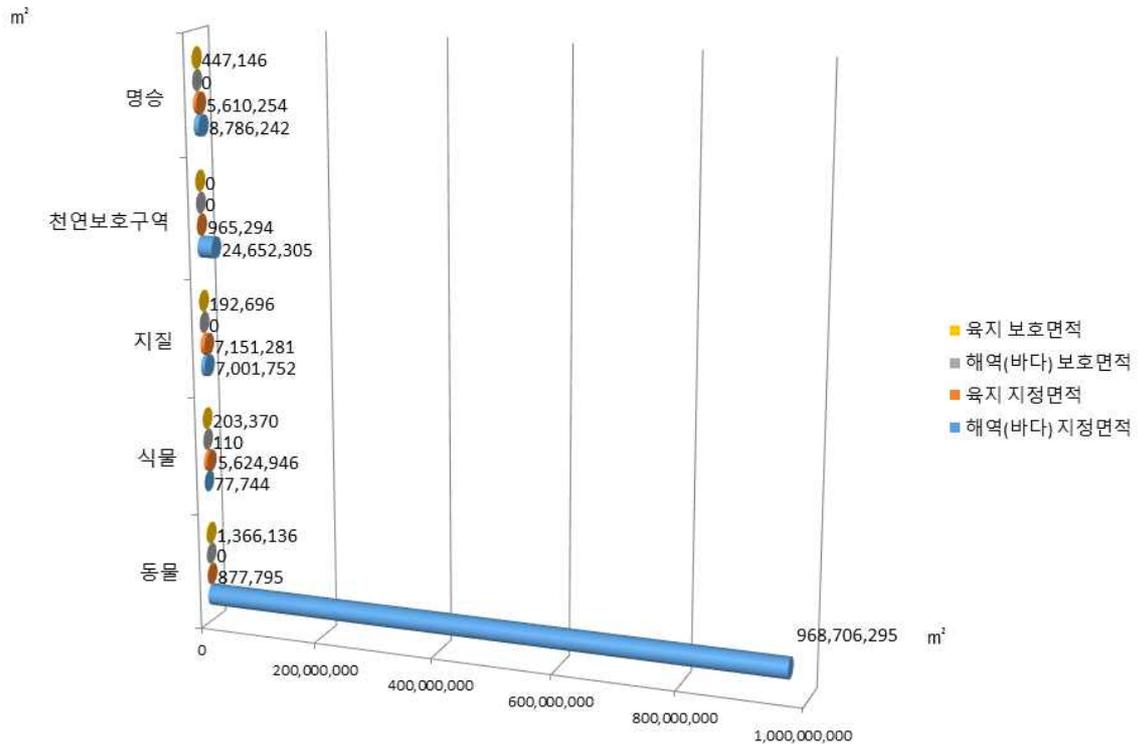
## 2. 해양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 기관의 민간위탁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기본계획 이행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 현재 천연기념물 동물 중 야생조류, 수달, 산양의 보존·관리를 위해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우리 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민간(법인 또는 단체)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

### 3. 한국의 갯벌 관리

- 문화재청·해양수산부·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서천군·고창군·신안군·보성군·순천시에 각각 2명~10여명이 세계유산 갯벌의 보호·관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인력은 갯벌 보존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세계유산 갯벌의 철저한 현장관리와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 예정

### 4. 해양자연유산의 면적



---

## 4. 해양자연유산의 관리사업 현황

- 별도 자료

---

## 5. 해양자연유산의 노테이크존 지정 전망

- 현재 우리 청은 관리단체인 지자체의 협조 하에 천연기념물(동·식물)의 생육공간 확보와 보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지정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주변 해역도 이 범주에 포함
- 백도의 경우, 섬 주변 해역 200m가 이미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채취·반출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제도가 시행(여수시 위임, 어업권 보장)
- 독도, 문섬 범섬, 신안 칠발도, 신안구굴도, 영광 칠산도, 강진 까막섬, 완도 주도, 제주사수도, 태안난도, 통영 흥도 등도 공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음

## 6.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지정현황과 향후 관리방안

- 천연기념물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지정('62.12.7.) 당시 위치는 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 연해 일원으로, 광범위한 귀신고래 회유 경로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위치·면적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정확한 위치·면적 등의 지정을 위해서는 귀신고래의 회유경로, 출현 개체수, 국내 이용현황 등 연구용역 등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문화재 지정구역 설정, 관리계획 등을 수립 예정
- 향후,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위치·면적 등이 지정되는 경우 관리단체 또는 시민단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존·관리

## 7.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로드맵

-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대상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주행정 목적으로 함
- 지정잠재자원의 발굴사업 등은 시행하고 있으나 지정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지정 목표 등을 설정하기 어려움

---

## 8. 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통합

- 기후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한 보호구역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은 보호구역 관리부처 간 보호구역 중복지정·운영 등에 의한 중복사업, 예산과다 투여, 보호대상의 불명확성, 부처이 기주의 등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
- 단, 현재 보호지역 국가기관연합 등 보호지역위원회가 부처간 운영되고 있으나 컨트롤타 워 기능과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연관된 보호지역 유형별 보호 목적에 부합한 소위원회(예:세계유산)에 각 부처가 소속되어야 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함

---

## 9. 석호 개발위협

- 동해안 일대에 위치한 석호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임
- 우리 청에서는 영양호 부잔교 설치와 관련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검토 의견을 속초시에 전달한 바 있음
- 석호의 개발에 따라 이러한 독특한 서식지가 축소되어 여러 천연기념물 서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 계획을 사전에 파악,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 수립 또는 재검토 등이 요구됨
- 특히, 18개 석호 중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로 그 가치가 인정될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또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보존관리 할 수 있음

---

## 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현황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5조(허가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1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정된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보호구역의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 11. 한국의 갯벌 추가 등재 계획

○ 세계유산의 추가 등재를 위해서는 국내적 보호조치 마련이 필수적이며,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철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함

○ 문화재청은 금년부터 세계유산에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추가 연구를 갯벌 추진단과 함께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여 추가 등재를 추진할 예정임





---



## [토론]

- 좌장: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실장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

## 환경부 관할 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한 제언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우리나라 해양 관련 보호구역은 현재 해양수산부(법적 근거↑, 현장관리 역량↓), 문화재청(법적 구속력, 제도적 다양성↑, 생물다양성 등 확장성↓), 환경부(관리면적, 현장관리 ↑, 주민 수용성 및 관리 의지↓)가 각 부처의 특성을 우위로 하여 공간 및 대상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권한과 역량의 한계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처가 없고, 모두 체계적 관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로 전환]** 위와 같은 평가는 비단 해양뿐 아니라, 육상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보호지역 관리를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선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할만한 제안이고, 적절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부처에 병합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거시적인 제안은, 육지/해양 보호지역별 모든 권한(지정, 심의, 변경, 허가 등)을 대통령 직속 국가 보호지역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관리 조직을 유형별로 확대 강화하는 형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바, 보호지역 통합 관리체계 논의도 실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한 사회 공론화 과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 관리방안]** 선결적으로는 연안-해양의 실효성 있는 보호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호 관리와 조사연구, 법 제도에 대한 일관성과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과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 위협요인 등의 조사 관찰 및 종합조사와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원 등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간의 협력을 어떤 모델로 도출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중 인식증진과 지역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제안과 수용,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필요성에 비해 최근 탄소흡수원을 우선하여 추진되는 정책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든 법적 명칭을 해양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0by 30등 해양 관련 보호구역 면적 확대, No-take Zone 도입에 있어 각 부처는 계속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의견수렴 등)를 우선하고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은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접근에서, 한 발 나아가 환경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로 발전하여왔다. 이 과정에

서 수많은 논란과 이해당사자들의 민원들이 극복됐다. 고찰해보면 법과 원칙이 우선되어야 이해당사자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양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서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법과 제도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용할 시범지역을 찾아내야 한다. 어민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이 마련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문화 가치의 창출 공간으로 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세 개 부처(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부)가 보호지역과 연계해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추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산업과 전통 생태(인문) 지식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수적으로는 교통 불편성, 배후여건 취약 등 정주 환경이 갖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우선 과제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도서개발 촉진법(섬 발전촉진법)의 다양한 개정방안 및 제도개선이 해양 보전관리 계획수립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고려해 대응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류를 이해하고, 해초를 보전하고, 고래를 보호해야]**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류이다. 과감하게는 해류 자체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초는 생물다양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고래는 바다의 깃대종이자 지표이다. 그동안 해양 없는 해양 정책이 수립되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연안 매립으로 수많은 해초가 사라졌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진 바 없다. 매년 수천 마리의 고래가 혼획되지만, 태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현 정부의 태도이다. 해양생태계가 살아야 수산이 살고, 주민이 산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행정, 담대한 시나리오를 던져야 한다. 민간 역시 그러한 부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각 부처의 과감한 해양 관련 보호구역 확대, No-take Zone 도입을 기대한다.

## 효과적인 정부 조직의 운용을 위하여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1. 참여해서 함께 고민해주는 해수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 그러나 발제문을 보면서 몹시 실망이 크다. 지난 5월 각 부처의 현황 설명과 추진 사업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 본 토론회의 핵심은 정부의 각 부처 사업 중 여러 부처에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종하여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국가의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보자는 것이다.
3. 즉 노출된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만 나열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낭비되어도, 자신이 속한 부처의 조직보존과 예산만 받아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속셈이다.
4. 또 미래 의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도 대부분 부처 조직증대와 예산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지극히 가벼움에 불과하다.
5. 환경부는 아예 참석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 보호에 대한 정책과 생각이 전혀 없거나,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단체나 참석하는 부처를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그런데 부처 간 정책이나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한국적 상황에서 반드시 문제만 있는 것인가? 오히려 복지부동이 한국 공무원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한국의 각 부처가 조직과 예산싸움을 하면서 “영역확보”를 하는 투쟁(?)마저 없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해양 정책은 오리무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7. 각론으로 들어가서 정부 조직에서 사업의 중복과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되어야 하며, 차기 정부의 주요 의제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8.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문화재청 산하 조직으로 일원화
  - 미국 국립공원의 탄생 목적은 보존이며, 우리나라 문화재청 역할이다. 현재 문화재청과 국립공원의 사업과 영역은 대부분 겹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처음 탄생 때부

터 “국민신탁”처럼 두 개로 나누든지 아니면 문화재청 산하 조직으로 구성했어야 했다.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조직 통폐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 자산을 “보존”하는 정책부서인지, “관리와 행정”을 위한 부서인지 구분해야 한다. 즉 환경부와 해수부는 “관리와 행정”을 주로 하는 부서이고, 문화재청은 “보존” 정책을 우선하는 부서이다.
10. 관리와 행정 부서는 “유산 heritage”이라는 개념과 영역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유산”은 보존정책이니 문화재청에서 환경부는 환경을 관리하고 행정 하는 부서로 존재하면 된다.
11. 현재도 법률적으로 우선되는 특별법 중심으로 부처별 영역을 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즉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우선이다.
12.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만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중복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처 간 중복 또는 이중 사업을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차기정부에 제안해보는 방안이 필요하다.
13. 연안과 해양-에 대한 정책 구성?
  - 지역과 국가 단위의 보존(문화재)이 상반되어 나타나는 문제-강화갯벌과 장곶돈대 주변 불법 건축
  - 어업 제한구역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장기적으론 이익, 미래 자산 차원.

## 부처와 시민사회가 상호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해양생태계 보전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해양보호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부로 관리되는 해양보호구역의 사례를 확인해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발굴해 교류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를 찾아 상호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해양보호구역,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등은 모두 국민과 후대를 위해 국가의 관할권에 속한 천혜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전과 관리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지정해 부처 간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관리 시너지를 내야 하지만, 현실에선 법적 관할의 모호성, 부처 이기주의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최근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석호인 영랑호 문제만으로도 법적 관할의 모호성이 드러났다. 천혜경관인 석호의 보호와 보전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관할권 문제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랑호엔 결국 부잔교라는 지역개발에 밀려났다.

석호는 사주나 사취 등의 영향으로 바다로부터 분리된 호수지만 담수와 염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매우 발달한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석호의 형성엔 인류의 시간이 아닌 지구의 시간으로 바라봐야 할 만큼 긴 시간이 걸리고 활발한 생태계로 자연환경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석호 하나만으로도 환경부, 문화재청, 해수부가 모두 중첩되는 지역이지만 최근 속초에서 진행된 영랑호 부잔교 설치에 담당 부처는 법적관할이 없다는 입장만을 견지했다.

문제는 법적 관할권이 없다면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만들고 보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논의는커녕 환경 보전 사안을 놓고 각 부처 간 제정되는 법령의 범명을 놓고도 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불편함을 만들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와 양질의 관리를 위해선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부 세 부처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모범사례(Good practice)를 선정하고 공유하면서 지정 과정을 공유하고 부처 간 법적 한계성과 상호 보완점을 지속해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세 부처의 협력에 시민단체가 함께해 의견을 공유하고 보완점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규적인 소통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세 부처가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주관한 협치의 시작이다. 아쉽게도 일부 부처에선 부처 간 혹은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느껴져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천혜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세 부처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향후 소통의 자리는 모범사례와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를 선정해 소통하고 해결점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붙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

-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부처별 질의와 답변

---

[붙임1] 해양수산부 질의 내용

1. 노테이크존(No-Take zone) 도입 및 지정 계획이 있으십니까? 바다목장, 인공어초, 신안 연안바다목장, 어장 휴식년제 등 현재 시행 중인 사업구역을 실질적인 '노테이크존(No-Take zone) 해양보호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절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노테이크존(No-Take zone)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3.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를 생태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으십니까? 향후 관련 내용을 연구·검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구 결과가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4.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국가 관할 해양 면적의 30%까지의 확대를 전제로 한 로드맵을 1~2년 단위로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우리나라는 현재 육상과 해양을 포함하여 5개 부처 22종의 보호구역, 약 2,200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호구역을 국가적 문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총리 직속 국가 보호지역위원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약 15년 전에 이뤄진 적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또는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 최근 속초 영랑호 부잔교 설치를 시작으로 18개 석호가 순차적으로 개발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석호는 환경부와 해수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개발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석호는 민물과 바닷물의 중간 성격을 갖춘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이루며 원앙, 수리부엉이,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이며 큰고니 등이 찾아오는 대표적 철새도래지입니다. 귀 기관은 석호 관리에 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7.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별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요청합니다.

8.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9곳을 추가해서 등재해야 합니다. 귀 부처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질의사항 답변서 (해양수산부)

1. 노테이크존(No-Take Zone) 도입 및 지정 계획은 있으십니까? 바다목장, 인공어초, 신안 연안바다목장, 어장 휴식년제 등 현재 시행중인 사업구역을 실질적인 ‘노테이크 존(No-Take Zone)’ 해양보호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노테이크 존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어업인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우리나라는 어업활동을 위한 연안해양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연안에 조밀하게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수산생물 자원 채취’를 전면금지하는 ‘노테이크 존’을 설정할 경우 어업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됨
  - 노테이크존 도입을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및 주변해역에서 어업, 관광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함
- 바다목장, 인공어초, 신안 연안바다목장, 어장 휴식년제 등을 노테이크존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들의 고유목적성(예: 수산자원 조성)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겠음

2. 절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노테이크존(No-Take Zone)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무인도서 관리를 총괄하는 해수부 담당부서(해양영토과)와 해양 생태학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무인도서 주변해역을 보호구역과 노테이크존으로 지정하는 방안  
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음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상 세부 추진과제로 “보전형 무인도서 지정 및 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일원화(보전형 무인도서)로 하고, 장기모니터링이 필요한 도서를 선별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됨
  - 이와 연계하여, 보전형 무인도서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또는 OECM 유형으로

편입하여 국내외 해양보호구역 확대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를 생태학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향후 관련 내용을 연구·검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구 결과가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는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를 활용한 보호구역 지정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 정부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효과에 대한 사회·경제·환경적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음.
- '22년 정부예산안에 해양보호구역 효과성평가 시범사업(2개소, 6억원) 반영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됨,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효과성 연구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4.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국가 관할 해양 면적의 30%까지의 확대를 전제로 한 로드맵을 1~2년 단위로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매년 해양수산부는 평균 1~2개소 씩 해양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있으며,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30 by 30)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해나가겠음
  - \* (국정과제) '22년까지 34개소 지정,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30년까지 영해 내 총 해역의 20%(17,201km<sup>2</sup>) 해양보호구역 확대 추진
- (2021) 화성 매항리갯벌 습지보호지역(7.20 지정고시)과 포항 호미곶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지정(12월 고시 예정)완료 예정(총면적: 14.33km<sup>2</sup>)
  - \*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21.11월 기준, 31개소, 면적 1,798.442km<sup>2</sup>): 습지보호지역 14개소, 해양보호구역 17개소(생태계 14, 생물 2, 경관 1)
- (2022년)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21년 생태계 조사 및 지자체 협의 완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해권역의 보호구역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2022년 이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제안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지자체 지정 요청 후보지 및 2단계 갯벌유산 등재 대상지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22년 해양의 기타효과적인보전조치(OECM) 유형 발굴을 완료하고, '국가보호지역 통합DB관리시스템(KDPA)'에 통합하여 글로벌 해양보호구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5. 우리나라는 현재 육상과 해양을 포함하여 5개 부처 22종의 보호구역, 약 2,200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호구역을 국가적 문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총리 직속 국가 보호지역위원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약 15년 전에 이뤄진 적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또는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현재 각 부처 보호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호지역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현황 및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논의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범부처 위원회 설립 시 해양수산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6. 최근 속초 영랑호 부잔교 설치를 시작으로 18개 석호가 순차적으로 개발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석호는 환경부와 해수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개발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석호는 민물과 바닷물의 중간 성격을 갖춘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이루며 원앙, 수리부엉이,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이며 큰고니 등이 찾아오는 대표적 철새도래지입니다. 귀 기관은 석호 관리에 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현재 늪, 호소, 연못, 하구, 석호 등 내륙습지에 관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연안과 인접해 있는 석호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음
  - \* 석호는 파도나 해류의 작용으로 생기는 사주(砂洲), 사취(砂嘴)에 의해 입구가 막혀서 생성된 자연호수로 담수·해수가 혼재하여 지형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호수임
  - \*\* 우리나라 석호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전·관리 사업(생태계교란종 제거, 환경정화활동 실시 등) 진행 중

**7.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별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요청합니다.**

-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은 보호구역 지정 후 매 5년마다 수립(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 함, 현황은 참고자료 붙임 참조

**8.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9곳을 추가해서 등재해야 합니다. 귀 부처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 드립니다.**

- 관련 부처(문화재청 등),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국제기구(IUCN, EAAFP, Birdlife International 등) 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단계 등재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등재를 완료할 계획임
  - 2단계 등재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철새 서식현황 파악 및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를 추진하겠음
  - \* (잠정지역) 군산, 부안, 인천, 무안, 고흥, 여수, 화성, 아산, 당진 등
  - 문헌 및 생태계 조사 결과 2단계 추가 등재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지역주민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계획임

## 참 고

##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현황 (31개소, 1,798.442km<sup>2</sup>)

| 지정명칭                        | 지정일   | 면적(km <sup>2</sup> ) | 위 치                                     | 관리기본계획<br>수립여부 |
|-----------------------------|---|----------------------|---|----------------|
| <b>습지보호지역<br/>(14개소)</b>    | 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1,437.8km <sup>2</sup> )                  |                      |   |                |
| 무안갯벌                        | '01.12.28   | 42                   |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 수립             |
| 진도갯벌                        | '02.12.28   | 1.44                 | 진도군 군내면·고군면 일대                          | 수립             |
| 순천만갯벌                       | '03.12.31   | 28                   |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 수립             |
| 보성별교갯벌                      | '18.09.03   | 32                   | 보성군 별교읍 일원(확대지정)                        | 수립             |
|                             | '20.12.31   | 2.07                 | 보성군 별교읍 장양리·영등리·장좌리                     | 수립 중('21년)     |
| 웅진장봉도갯벌                     | '03.12.31   | 68.4                 | 웅진군 장봉리 일대 갯벌                           | 수립             |
| 부안졸포만갯벌                     | '06.12.05   | 4.9                  | 부안군 졸포면, 보안면 일원                         | 수립             |
| 고창갯벌                        | '18.09.03   | 64.66                |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및 해리면<br>일원(확대 지정)         | 수립             |
| 서천갯벌                        | '18.09.03   | 68.09                | 서천군 서면, 비인면, 마서면, 종천면 및<br>상항읍 일원(확대지정) | 수립             |
| 송도갯벌                        | '09.12.31   | 6.11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수립             |
| 신안갯벌                        | '18.09.03   | 1,100.86             | 전남 신안군 일원(확대지정)                         | 수립             |
| 마산만<br>봉암갯벌                 | '11.12.16   | 0.1                  |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일대                        | 수립             |
| 시흥갯벌                        | '12.02.17   | 0.71                 | 시흥시 장곡동 일대                              | 수립             |
| 대부도갯벌                       | '17.03.22   | 4.53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 수립             |
| 매항리갯벌                       | '21.07.20   | 14.08                |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일원                          | 수립예정('22년)     |
| <b>해양생태계<br/>보호구역(14개소)</b>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61.272km <sup>2</sup> ) |                      |   |                |
| 신두리사구                       | '02.10.09   | 0.64                 |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수립             |
| 문섬 등                        | '02.11.05   | 13.684               | 서귀포시 강정동-보목동 일원해역                       | 수립             |
| 오륙도                         | '03.12.31   | 0.35                 | 부산시 남구 용호동                              | 수립             |
| 대이작도                        | '03.12.31   | 55.7                 | 웅진군 이작리, 승봉리 일원                         | 수립             |
| 가거도                         | '12.11.30   | 70.17                |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일원                         | 수립             |
| 소화도                         | '12.11.30   | 0.81                 |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일원                          | 수립             |
| 나무섬                         | '13.11.29   | 0.275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                          | 수립             |
| 남형제섬                        | '13.11.29   | 0.1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                          | 수립             |
| 청산도                         | '13.11.29   | 71.38                | 완도군 청산면 일원                              | 수립             |
| 울릉도                         | '14.12.29   | 39.44                | 울릉군 울릉읍 북면·서면 주변해역                      | 수립             |
| 추자도                         | '15.12.29   | 1.18                 |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예소리 일원                     | 수립             |
| 토끼섬                         | '16.12.29   | 0.593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원                          | 수립             |
| 조도                          | '17.12.08   | 5.01                 |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일원                      | 수립             |
| 통영선촌마을                      | '20.2.14  | 1.94                 |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마을 일원                  | 수립             |
| <b>해양생물<br/>보호구역(2개소)</b>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94.14km <sup>2</sup> )   |                      |   |                |
| 가로림만                        | '16.07.28   | 92.04                | 서산시 및 태안군 가로림만 해역                       | 수립             |
| 고성하이먼                       | '19.12.31   | 2.1                  | 경남 고성군 하이먼 덕호리 주변해역                     | 수립             |

|                   |  |      |                      |    |
|-------------------|--|------|----------------------|----|
| 해양경관<br>보호구역(1개소) |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5.23km <sup>2</sup> ) |      |                      |    |
| 보령소항사구            | '18.12.01  | 5.23 |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및 독산리 일원 | 수립 |

[붙임3] 환경부 질의 내용

1.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할 당시, 담당 과장이 해상·해안 국립공원에 처음으로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현장 관리인 간 현장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 담당자가 현장과의 괴리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2. 육지를 관리하는 방식을 해양에 적용하다 보니 용도 지구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안습지와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해역 부분을 해수부와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판단의 근거를 요청드립니다.
3. 2020년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양생물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특별보호구역의 해역 부분을 노테이크존(No-Take zone)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4.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국가 관할 해양 면적의 30%까지의 확대를 전제로 한 로드맵을 1~2년 단위로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우리나라는 현재 육상과 해양을 포함하여 5개 부처 22종의 보호구역, 약 2,200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호구역을 국가적 문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총리 직속 국가 보호지역위원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약 15년 전에 이뤄진 적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또는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 최근 속초 영랑호 부잔교 설치를 시작으로 18개 석호가 순차적으로 개발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석호는 환경부와 해수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석호는 민물과 바닷물의 중간 성격을 갖춘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이루며 원앙, 수리부엉이,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이며 큰고니 등이 찾아오는 대표적 철새도래지입니다. 귀 기관은 석호 관리에 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7. 해상·해안 국립공원과 관련된 개별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8.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9곳을 추가해서 등재해야 합니다. 귀 부처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붙임4] 환경부 답변 내용

없음.

[붙임5] 문화재청 질의 내용

1.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강화 남단갯벌 등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2.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귀 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60여명 관리 인원은 유네스코 갯벌 관리만 위해 배정된 자원입니까?
4. 현재 해양에 있는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과 명승에 대한 면적, 관리사업 등 현황과 관리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합니다.
5. 백도 등 천연기념물 주변 해역을 노테이크존(No-Take zone)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6. 천연기념물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지정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방향은 어떠합니까?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해나갈 의사가 있습니까?
7.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국가 관할 해양 면적의 30%까지의 확대를 전제로 한 로드맵을 1~2년 단위로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8. 우리나라는 현재 육상과 해양을 포함하여 5개 부처 22종의 보호구역, 약 2,200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호구역을 국가적 문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총리 직속 국가 보호지역위원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약 15년 전에 이뤄진 적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청의 입장 또는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9. 최근 속초 영랑호 부잔교 설치를 시작으로 18개 석호가 순차적으로 개발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석호는 환경부와 해수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개발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석호는 민물과 바닷물의 중간 성격을 갖춘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이루며 원앙, 수리부엉이,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이며 큰고니 등이 찾아오는 대표적 철새도래지입니다. 귀 기관은 석호 관리에 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별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요청합니다.

11.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9곳을 추가해서 등재해야 합니다. 귀 부처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붙임6] 문화재청 답변 내용

1.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강화 남단갯벌 등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이외에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갯벌은 강화 남단갯벌 일부가 포함된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이며, 이외 다수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 강화 남단갯벌 등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별도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제35조(허가사항)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 문화재 지정(보호)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 지정된 한국의 갯벌 및 2025년 확대 추진 지역 중 철새의 서식지 등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지역(유부도 갯벌, 화성 제부도 갯벌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계획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귀 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기본계획 이행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 현재 천연기념물 동물 중 야생조류, 수달, 산양의 보존·관리를 위해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를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민간(법인 또는 단체)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60여명 관리 인원은 유네스코 갯벌 관리만 위해  
배정된 자원입니까?**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60여명 관리인원이 갯벌 관리만을 위해 배정된 자원 인지에 대한 질의는 60여명의 관리인원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문화재청·해양수산부·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서천군·고창군·신안군·보성군·순천시에 각각 2명~10여명이 세계유산 갯벌의 보호·관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인력은 갯벌 보존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세계유산 갯벌의 철저한 현장관리와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4. 현재 해양에 있는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과 명승에 대한 면적, 관리사업 등  
현황과 관리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합니다.**

- 현재 해양에 있는 자연유산에 대한 면적, 관리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자연유산 면적(별첨 1)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별첨 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백도 등 천연기념물 주변 해역을 노테이크존(No-Take zone)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현재 우리청은 관리단체인 지자체의 협조 하에 천연기념물(동·식물)의 생육공간 확보와 보존관리 효율화를 위해 지정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주변 해역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백도의 경우, 섬 주변 해역 200m가 이미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채취·반출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여수시 위임, 어업권 보장)

**6. 천연기념물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위치와 면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  
니다.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지정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방향은 어떠합니까?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해나갈 의사가 있습니까?**

- 천연기념물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지정('62. 12. 7.) 당시 위치는 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 연해 일원으로, 광범위한 귀신고래 회유 경로 등을 특정하기 어려

위 정확한 위치·면적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정확한 위치·면적 등의 지정을 위해서는 귀신고래의 회유경로, 출현 개체수, 국내 이용현황 등 연구용역 등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문화재 지정구역 설정,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의 위치·면적 등이 지정되는 경우 관리단체 또는 시민단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국가 관할 해양 면적의 30%까지의 확대를 전제로 한 로드맵을 1~2년 단위로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청은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대상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주행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정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지정 목표 등을 설정하기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8. 우리나라는 현재 육상과 해양을 포함하여 5개 부처 22종의 보호구역, 약 2,200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호구역을 국가적 문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총리 직속 국가 보호지역위원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약 15년 전에 이뤄진 적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청의 입장 또는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기후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한 보호구역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은 보호구역 관리부처 간 보호구역 중복지정·운영 등에 의한 중복사업, 예산과다 투여, 보호대상의 불명확성, 부처이기주의 등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단, 보호지역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연관된 보호지역 유형별 보호 목적에 부합한 소위원회(예:세계유산)에 각 부처가 소속되어야 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9. 최근 속초 영랑호 부잔교 설치를 시작으로 18개 석호가 순차적으로 개발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석호는 환경부와 해수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석호는 민물과 바닷물의 중간 성격을 갖춘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이루며 원앙, 수리부엉이,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사는 곳이며 큰고니 등이 찾아오는 대표적 철새도래지입니다. 귀 기관은 석호 관리에 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동해안 일대에 위치한 석호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 우리 청에서는 영랑호 부잔교 설치와 관련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검토 의견을 속초시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 석호의 개발에 따라 이러한 독특한 서식지가 축소되어 여러 천연기념물 서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 계획을 사전에 파악,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 수립 또는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18개 석호 중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로 그 가치가 인정될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또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보존관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별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요청합니다.**

-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5조(허가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1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정된 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보호구역의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11.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9곳을 추가해서 등재해야 합니다. 귀 부처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 드립니다.**

- 세계유산의 추가 등재를 위해서는 국내적 보호조치 마련이 필수적이며, 또한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철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합니다.
- 문화재청은 금년부터 세계유산에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및 추가 연구를 갯벌 추진단과 함께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여 추가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1]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구역 총면적(섬)

| 구분 | 분류 | 번호  | 지정명칭                          | 지정면적        |         | 보호면적   |           | 총면적         |
|----|----|-----|-------------------------------|-------------|---------|--------|-----------|-------------|
|    |    |     |                               | 해역(바다)      | 육지      | 해역(바다) | 육지        | 총면적         |
| 동물 | 천기 | 27  |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 16,911      | 247,543 |        | 35,616    | 300,070     |
| 동물 | 천기 | 237 |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             | 2,800   |        |           | 2,800       |
| 동물 | 천기 | 442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 90,105,503  |         |        |           | 90,105,503  |
| 동물 | 천기 | 101 | 진도 고니류 도래지                    | 8,523,220   |         |        |           | 8,523,220   |
| 동물 | 천기 | 227 |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 435,015,316 |         |        |           | 435,015,316 |
| 동물 | 천기 | 233 |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             | 20,751  |        |           | 20,751      |
| 동물 | 천기 | 332 |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바다제비,슴새,칼새) 번식지   |             | 36,993  |        |           | 36,993      |
| 동물 | 천기 | 333 |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슴새) 번식지      |             | 138,701 |        |           | 138,701     |
| 동물 | 천기 | 334 | 태안 난도 갯이갈매기 번식지               |             | 47,603  |        |           | 47,603      |
| 동물 | 천기 | 335 | 통영 홍도 갯이갈매기 번식지               |             | 98,380  |        |           | 98,380      |
| 동물 | 천기 | 341 | 신안 구굴도 바닷새류(빨쇠오리,바다제비,슴새) 번식지 |             | 26,380  |        |           | 26,380      |
| 동물 | 천기 | 360 | 웅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갯이갈매기 번식지       |             | 3,623   |        |           | 3,623       |
| 동물 | 천기 | 389 | 영광 칠산도 갯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번식지   |             | 232,670 |        |           | 232,670     |
| 동물 | 천기 | 419 |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435,045,345 | 22,351  |        |           | 435,067,696 |
| 동물 | 천기 | 53  | 진도의 진도개                       |             |         |        |           |             |
| 동물 | 천기 | 347 | 제주의 제주마                       |             |         |        | 1,329,927 | 1,329,927   |
| 동물 | 천기 | 546 | 제주 흑우                         |             |         |        |           |             |
| 동물 | 천기 | 550 | 제주 흑돼지                        |             |         |        |           |             |
| 동물 | 천기 | 458 | 산골뚝나비                         |             |         |        |           |             |
| 동물 | 천기 | 304 |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             |         |        | 593       | 593         |
| 식물 | 천기 | 161 |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             |         |        | 3,591     | 3,591       |
| 식물 | 천기 | 160 | 제주 산천단 곰솔 군                   |             |         |        | 7,332     | 7,332       |
| 식물 | 천기 | 441 | 제주 수산리 곰솔                     |             |         |        | 11,142    | 11,142      |
| 식물 | 천기 | 212 |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                   |             |         |        | 1,273     | 1,273       |
| 식물 | 천기 | 299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             |         |        | 1,078     | 1,078       |
| 식물 | 천기 | 345 | 통영 추도 후박나무                    |             |         | 110    | 638       | 748         |
| 식물 | 천기 | 111 |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             |         |        | 633       | 633         |
| 식물 | 천기 | 78  |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             |         |        | 79        | 79          |
| 식물 | 천기 | 79  | 강화 사기리 탕자나무                   |             |         |        | 262       | 262         |
| 식물 | 천기 | 344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              |             |         |        | 515       | 515         |

|    |    |     |                            |        |           |  |        |           |
|----|----|-----|----------------------------|--------|-----------|--|--------|-----------|
| 식물 | 천기 | 479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        | 1,256     |  |        | 1,256     |
| 식물 | 천기 | 502 |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        |           |  | 314    | 314       |
| 식물 | 천기 | 523 |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        |           |  | 2,039  | 2,039     |
| 식물 | 천기 | 538 | 독도 사철나무                    |        | 200       |  |        | 200       |
| 식물 | 천기 | 544 | 제주 강정동 담팔수                 |        | 15,357    |  |        | 15,357    |
| 식물 | 천기 | 28  | 완도 주도 상록수림                 |        | 17,355    |  |        | 17,355    |
| 식물 | 천기 | 65  | 울주 목도 상록수림                 |        | 15,074    |  |        | 15,074    |
| 식물 | 천기 | 107 |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        | 2,028,988 |  |        | 2,028,988 |
| 식물 | 천기 | 136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        | 32,295    |  | 82,819 | 115,114   |
| 식물 | 천기 | 172 |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        | 14,480    |  |        | 14,480    |
| 식물 | 천기 | 189 | 울릉 성인봉 원시림                 |        | 178,513   |  |        | 178,513   |
| 식물 | 천기 | 374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        | 448,758   |  |        | 448,758   |
| 식물 | 천기 | 375 | 제주 남읍리 난대림                 |        | 32,704    |  |        | 32,704    |
| 식물 | 천기 | 376 |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        | 247,935   |  |        | 247,935   |
| 식물 | 천기 | 377 |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        | 20,444    |  |        | 20,444    |
| 식물 | 천기 | 378 | 제주 천제연 난대림                 |        | 696,659   |  | 45,476 | 742,135   |
| 식물 | 천기 | 379 | 제주 천지연 난대림                 |        | 88,114    |  | 46,179 | 134,293   |
| 식물 | 천기 | 517 | 제주 물장오리 오름                 |        | 53,813    |  |        | 53,813    |
| 식물 | 천기 | 40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 47,875 | 10,611    |  |        | 58,486    |
| 식물 | 천기 | 339 |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 26,097 |           |  |        | 26,097    |
| 식물 | 천기 | 340 |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        | 17,468    |  |        | 17,468    |
| 식물 | 천기 | 50  |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 및 너도밤나무군락 |        | 171,792   |  |        | 171,792   |
| 식물 | 천기 | 51  | 울릉 도동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군락      |        | 49,587    |  |        | 49,587    |
| 식물 | 천기 | 52  |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        | 5,807     |  |        | 5,807     |
| 식물 | 천기 | 138 |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        | 3,989     |  |        | 3,989     |
| 식물 | 천기 | 156 |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        | 186,485   |  |        | 186,485   |
| 식물 | 천기 | 159 |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        | 1,357     |  |        | 1,357     |
| 식물 | 천기 | 191 | 제주의 한란                     |        |           |  |        |           |
| 식물 | 천기 | 428 | 안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        | 21,690    |  |        | 21,690    |
| 식물 | 천기 | 429 |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 3,772  | 3,142     |  |        | 6,914     |
| 식물 | 천기 | 432 | 제주 상호동 한란 자생지              |        | 389,879   |  |        | 389,879   |
| 식물 | 천기 | 48  |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        | 24,132    |  |        | 24,132    |
| 식물 | 천기 | 49  | 울릉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        | 11,900    |  |        | 11,900    |

|        |    |     |                             |           |           |  |         |           |
|--------|----|-----|-----------------------------|-----------|-----------|--|---------|-----------|
| 식물     | 천기 | 63  |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           | 11,009    |  |         | 11,009    |
| 식물     | 천기 | 162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           | 383,896   |  |         | 383,896   |
| 식물     | 천기 | 343 | 통영 옥지면 모밀잣밤나무 숲             |           | 18,737    |  |         | 18,737    |
| 식물     | 천기 | 18  |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           | 142,612   |  |         | 142,612   |
| 식물     | 천기 | 19  |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           | 3,174     |  |         | 3,174     |
| 식물     | 천기 | 66  | 웅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복한지           |           | 270,775   |  |         | 270,775   |
| 식물     | 천기 | 162 |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           | 4,959     |  |         | 4,959     |
| 천연보호구역 | 천기 | 170 | 홍도천연보호구역                    |           |           |  |         |           |
| 천연보호구역 | 천기 | 182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           |  |         |           |
| 천연보호구역 | 천기 | 336 | 독도천연보호구역                    |           |           |  |         |           |
| 천연보호구역 | 천기 | 420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 4,641,776 | 377,872   |  |         | 5,019,648 |
| 천연보호구역 | 천기 | 421 |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 9,006,410 | 190,412   |  |         | 9,196,822 |
| 천연보호구역 | 천기 | 422 | 차귀도천연보호구역                   | 5,492,995 | 162,932   |  |         | 5,655,927 |
| 천연보호구역 | 천기 | 423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 5,511,124 | 234,078   |  |         | 5,745,202 |
| 지질     | 천기 | 195 |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산지             | 62,692    | 11,643    |  |         | 74,335    |
| 지질     | 천기 | 464 |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바자국 화석산지        | 124,700   |           |  | 192,696 | 317,396   |
| 지질     | 천기 | 508 | 웅진 소청도 선캄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분바위  | 7,893     | 21,793    |  |         | 29,686    |
| 지질     | 천기 | 393 | 웅진 백령도 진촌리 맨틀포획암 분포지        |           | 6,307     |  |         | 6,307     |
| 지질     | 천기 | 505 | 진도 동거차도 유문암질 단괴             |           | 63,450    |  |         | 63,450    |
| 지질     | 천기 | 263 |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           | 464,469   |  |         | 464,469   |
| 지질     | 천기 | 391 | 웅진 백령도 사곶 사빈                | 2,566,000 |           |  |         | 2,566,000 |
| 지질     | 천기 | 392 | 웅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 2,779,000 | 26,344    |  |         | 2,805,344 |
| 지질     | 천기 | 438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 874,000   |           |  |         | 874,000   |
| 지질     | 천기 | 439 | 제주 비양도 호니토                  | 1,323     |           |  |         | 1,323     |
| 지질     | 천기 | 443 |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 358,400   | 22,568    |  |         | 380,968   |
| 지질     | 천기 | 444 |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           | 2,109,410 |  |         | 2,109,410 |
| 지질     | 천기 | 501 | 군산 말도 습곡구조                  |           |           |  |         |           |
| 지질     | 천기 | 507 | 웅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 18,779    | 61,219    |  |         | 79,998    |
| 지질     | 천기 | 511 | 태안 내파수도 해안 자갈톱              | 41,246    | 6,287     |  |         | 47,533    |
| 지질     | 천기 | 513 |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 167,719   | 43,292    |  |         | 211,011   |
| 지질     | 천기 | 525 |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           | 8,421     |  |         | 8,421     |
| 지질     | 천기 | 526 | 제주 사계리 용머리 화산쇄설층            |           | 51,132    |  |         | 51,132    |
| 지질     | 천기 | 98  |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           | 1,434,534 |  |         | 1,434,534 |
| 지질     | 천기 | 236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           | 651,740   |  |         | 651,740   |
| 지질     | 천기 | 342 |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           | 231,158   |  |         | 231,158   |
| 지질     | 천기 | 384 | 제주 당처물동굴                    |           | 51,093    |  |         | 51,093    |

|    |    |     |                                 |               |            |     |           |               |
|----|----|-----|---------------------------------|---------------|------------|-----|-----------|---------------|
| 지질 | 천기 | 466 | 제주 용천동굴                         |               | 743,185    |     |           | 743,185       |
| 지질 | 천기 | 467 | 제주 수산동굴                         |               | 443,148    |     |           | 443,148       |
| 지질 | 천기 | 490 | 제주 선홀로 뱀뒤굴                      |               | 253,899    |     |           | 253,899       |
| 지질 | 천기 | 552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북오름굴,대림굴) |               | 446,189    |     |           | 446,189       |
| 명승 | 명승 | 2   | 거제 해금강                          | 134,777       | 89,215     |     |           | 223,992       |
| 명승 | 명승 | 3   | 완도 정도리 구계등                      | 104,359       | 48,566     |     |           | 152,925       |
| 명승 | 명승 | 7   |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 2,605,331     | 465,566    |     |           | 3,070,897     |
| 명승 | 명승 | 8   | 웅진 백령도 두무진                      | 1,605,168     | 318,544    |     |           | 1,923,712     |
| 명승 | 명승 | 9   | 진도의 바닷길                         | 3,826,374     |            |     | 28,318    | 3,854,692     |
| 명승 | 명승 | 18  | 소매물도 등대섬                        | 140,226       | 77,724     |     |           | 217,950       |
| 명승 | 명승 | 24  | 부산 오륙도                          |               | 28,189     |     |           | 28,189        |
| 명승 | 명승 | 43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273,530       | 28,442     |     |           | 301,972       |
| 명승 | 명승 | 69  |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바위                 | 7,870         | 2,656      |     |           | 10,526        |
| 명승 | 명승 | 77  | 제주 서귀포 산방산                      |               | 1,003,166  |     |           | 1,003,166     |
| 명승 | 명승 | 78  | 제주 서귀포 쇠소깍                      |               | 47,130     |     |           | 47,130        |
| 명승 | 명승 | 79  | 제주 서귀포 외돌개                      | 88,607        | 7,931      |     |           | 96,538        |
| 명승 | 명승 | 83  | 사라오름                            |               | 62,863     |     |           | 62,863        |
| 명승 | 명승 | 84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               | 969,914    |     |           | 969,914       |
| 명승 | 명승 | 90  | 한라산 백록담                         |               | 210,230    |     |           | 210,230       |
| 명승 | 명승 | 91  | 한라산 선작지왓                        |               | 632,485    |     |           | 632,485       |
| 명승 | 명승 | 92  | 제주 방선문                          |               | 15,353     |     |           | 15,353        |
| 명승 | 명승 | 113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               | 152,915    |     | 19,845    | 172,760       |
| 명승 | 명승 | 117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               |            |     |           |               |
| 명승 | 명승 | 121 |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               |            |     |           |               |
| 명승 | 명승 | 34  | 보길도 윤선도 원림                      |               | 81,745     |     | 398,983   | 480,728       |
| 명승 | 명승 | 80  | 진도 윤림산방                         |               | 1,367,620  |     |           | 1,367,620     |
|    |    |     |                                 | 1,009,224,338 | 20,229,570 | 110 | 2,209,348 | 1,031,663,366 |